[투자일임약관 제2차 개정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5조 (투자일임수수료)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. 1.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[별지1]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선취 지급하는 수수료. 2. 성과수수료 :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	**제5조 (투자일임수수료)**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. 1.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[별지1]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후취로 지급하는 수수료. 2. 성과수수료 :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에 연동되어 [별지1]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의 성과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연 1회 후취로 지급하는 수수료
제5조의 2 (투자일임수수료의 납입) ①~② 생략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, 성과수수료는 계약종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, 고객과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단, 회사가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④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⑤ 생략	**제5조의 2 (투자일임수수료의 납입)** ①~② 생략 ③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계약종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, 고객과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단, 회사가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④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중도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며, 고객은 중도해지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⑤ 생략
[별지 1] **1. (계약의 내용)** ⑨ 서류 등 수령방법 - 투자일임보고서 수령 방법 (택1) : □ 우편 □ 이메일(e-mail)	**[별지 1]** **1. (계약의 내용)** ⑨ 서류 등 수령방법 - 투자일임보고서 수령 방법 (택1) : □ 이메일(e-mail) □ 기타( )
[별지 1] **1. (계약의 내용)** ⑩ 기타	**[별지 1]** **1. (계약의 내용)** ⑩ 기타

<table>
<tr>
<td>- 본 일임계약은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환오픈형 계약이며, 향후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과세신고는 고객이 직접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함.
- 제6조 제5항에 따른 연체이자율는 연 6%로 정함</td>
<td>- 본 일임계약은 해외자산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환오픈형 계약이며, 향후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과세신고는 고객이 직접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함
- 제6조 제5항에 따른 연체이자율는 연 6%로 정함
- 제6조 제1항에 따른 최소 계약금액은 5억원으로 정함</td>
</tr>
<tr>
<td>[별지 1]
2.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</td>
<td>[별지 1]
2.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
<table>
<tr><th>성 명</th><th>담당업무</th><th>학력 및 주요경력</th><th>자격사항</th></tr>
<tr><td>김두용</td><td>투자일임
재산 운용</td><td>학력 :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
경력 : 머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(150904~현재)
머스트홍딩스(구,머스트투자자문) 대표이사 (090407~150903)
머스트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이사 (060426~090406)</td><td>투자자산운용사</td></tr>
<tr><td>정기홍</td><td>투자일임
재산 운용</td><td>학력 :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
경력 : 머스트자산운용 운용총괄 (150904~현재)
머스트홍딩스(구,머스트투자자문) 리서치팀장 (090615~150903)</td><td>투자자산운용사,
외국환전문인력</td></tr>
</table>(임직원 경력 추가)</td>
</tr>
<tr>
<td>[별지 2]
2.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방식
2.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방식
<table>
<tr><td>① 기본수수료</td><td>A. 추가계약시
- 납입액 : 추가계약금액 ×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/ 365 ×기본수수료율
B. 중도(일부 또는 전부)인출시
- 환급액 : 중도인출금액 ×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/ 365 ×기본수수료율</td></tr>
<tr><td>② 성과수수료</td><td>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</td></tr>
<tr><td>③ 최종수익률</td><td>- (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– 기준계약금액) / 기준계약금액 * 100
*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td></tr>
<tr><td>④ 중도해지시</td><td>A. 기본수수료의 환급
- 고객의 요청시 또는 본 계약 제 3 조 제 7 호 단서에 따른 사유로 회사의 요청시 : 미경과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그 해당금액
- 회사의 요청시 : 투자일임수수료 전액
단, 본 계약 제 6 조의 ②의 사유로 회사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
B. 중도해지수수료의 납입
- 고객의 요청시 : 계약 후 3 개월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70%
계약 후 3 개월 이후 6 개월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%
계약 후 6 개월 이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</td></tr>
</table>* 기준계약금액 : 중도인출금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일평잔
* 윤년인 경우 1 년을 366 일로 계산
* 수수료는 1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.</td>
<td>[별지 2]
2.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방식
[별지2] 투자일임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
1. 수수료 계산방식
<table>
<tr><td>① 기본수수료</td><td>계약금액 × 기본수수료율 × (계산기간일수 / 365)</td></tr>
<tr><td>② 성과수수료</td><td>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</td></tr>
<tr><td>③ 최종수익률</td><td>(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– 계약금액)/ 계약금액 * 100
*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td></tr>
</table>* 윤년인 경우 1 년을 366 일로 계산하고, 수수료는 1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.
2.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 계산방식
- 계약금액 변경시
<table>
<tr><td>① 기본수수료</td><td>A. 계약금액 증액 : 1.①에 따른 기본수수료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
- 증액된 계약금액 ×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/ 365 ×기본수수료율
B. 계약금액 감액 : 1.①에 따른 기본수수료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
- 감액된 계약금액 ×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/ 365 ×기본수수료율</td></tr>
<tr><td>② 성과수수료</td><td>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</td></tr>
<tr><td>③ 최종수익률</td><td>(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– 기준계약금액) / 기준계약금액 * 100
*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td></tr>
</table>* 기준계약금액 : 계약금액의 증도 증액 또는 감액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일평잔
* 윤년인 경우 1 년을 366 일로 계산하고, 수수료는 1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.
- 중도 해지시
<table>
<tr><td>① 기본수수료</td><td>A. 고객 요청으로 인한 중도 해지 : 1.①에 따른 기본수수료에서 미경과일수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계산 후 차감
B. 회사 요청으로 인한 중도 해지: 기본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. 단 본 계약 제6조의 ②의 사유로 회사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시에 준해서 계산</td></tr>
<tr><td>② 성과수수료</td><td>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</td></tr>
<tr><td>③ 최종수익률</td><td>(계산기간 말의 총평가금액 – 계약금액)/ 계약금액 * 100
*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td></tr>
<tr><td>④ 중도해지수수료</td><td>- 고객의 해지 요청시 및 본 계약 제 6 조의 ②의 사유로 회사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: 계약 후 3 개월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70%
계약 후 3 개월 이후 6 개월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%
계약 후 6 개월 이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</td></tr>
</table>* 윤년인 경우 1 년을 366 일로 계산하고, 수수료는 1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계산한다.
(계약금액 변경시/중도 해지시 표 분할 등)</td>
</tr>
</table>